

【 광림요양원 운영규정의 개요 】

시 설 명	광 림 요 양 원		
운 영 주 체	개인	개 원 일 자	2019. 07. 10
홈 페이지	http://gwanglim.wdw.kr		
주 소	경기 의정부시 송산로 1181번길 107-18 (용현동 129)		
제공급여 종류	시 설 급 여		
배상책임보험	삼성화재	유 효 기 간	
	52120760540000	2021년 07월 09일~2031년 07월 09일	
화 재 보 험	삼성화재	유 효 기 간	
	52120760540000	2021년 07월 09일~2031년 07월 09일	
입 소 정 원	99 명		

입 소 대 상	- 치매 ·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1·2·3 · 4·5 시설등급을 받은 자 -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		
계 약 규 정	- 계약목적: 입소자와 시설과의 계약,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. - 계약기간: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 - 월 이용료: 본인부담금은 공단정구금액의 20%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경감대상자는 12%, 8%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.		
입 소 서 류	- 수급자 및 보호자는 장기요양이용계약서 작성 후 각 1부씩 보관. - 각종 동의서 서명 및 입소서류 제출. 가. 장기요양인정서 다. 건강진단서(법정 전염병검사지) 마. 수급자증명서(해당자) 나. 장기요양서비스이용계획서 라. 복용 중인 처방전(의사소견서)		

◇ 종사자 현황 ◇

	시설장	사무국장	사회복지사	협약의	간호사(소후)사	물리치료사	요양보호사	산원	영양사	조리원	위생원	관리인	합 계
남	-	-	-	1	-	1	3		-	-	-	1	6
여	1	1	3	-	1(5)	-	40	1	-	-	2	-	54
합 계	1	1	3	1	6	1	43	1	-	-	2	1	60

◇ 시설의 규모 및 현황 ◇

소 유 형 태	대 지 면 적	연 면 적	건물규모	용 적 륜
개 인 소 유	1,260㎡	2,365.15㎡	지하1층 지상2층	285.37%

구 분	침 실	사무실	간호사실	특별침실	물리치료실	프로그램실	식당/조리실	강당	세면장/목욕실
시 설	26	1	1	2	1	1	1	1	20

◇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◇

주 의 사 항	- 입소자는 본원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하며,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함 -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본 요양원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함
---------	---

◇ 비급여 및 등급별 급여 수가 ◇

구 분	1 등 급	2 등 급	3 등 급
급 여 수 가	84,240원/일	78,150원/일	73,800원/일
비 급 여 항 목	월 이용료		
식 재 료 비 및 간 식 비	식비(1식) : 4,000원	간식비(1일2회) : 1,500원	
	28일 : 336,000원	28일 : 42,000원	
	30일 : 360,000원	30일 : 45,000원	
	31일 : 372,000원	31일 : 46,500원	
이 미 용 비	무료 (자원봉사자 활용)		
	본인이 원하시어 외부미용시설을 이용할 경우, 실비적용		
상급침실이용비	없 음		

◇ 필요시 의료이용 절차 ◇

병 원 진 료 상 황 발 생 시	• 보호자에게 연락 및 상황 설명 후 조치 진행 • 수급자께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, 진료비와 부과 서비스 경비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별도 징수함
응 급 상 황 발 생 시	• 응급처치 및 응급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 •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, 본 요양원 직원이 병원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함
협 약 의 료 기 관	• 연세드림의원 • 서울사랑요양병원

◇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◇

신원인수인의 권리	• 제공되는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• 간호, 프로그램, 재활, 식사,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대한 상세내역 요청할 권리 • 수급자의 처우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할 권리
신원인수인의 의무	• 수급자의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•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납부 • 신원인수인의 주소, 연락처, 주보호자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
계 약 해 지	•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성 소지자 또는 보균자(활동성)으로 판정될 때 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• 기관내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수급자에게 피해